

TYM 협력사 실천규범

(Supplier code of conduct)



주식회사 티와이엠

I. 개요

1. 실천규범 목적

TYM은 협력사와 상생하며 동시에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. 최근 농기계 산업부문도 친환경, 디지털화, 모빌리티 서비스, IoT기술의 확산 등 기술 융복합을 통한 전방위적 혁신이 도입되고 있습니다. TYM은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사 실천규범을 제정하였으며, 점진적으로 전 협력사에게 기업의 경영활동에 적용되는 법률,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, 환경, 노동/인권, 안전/보건,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운영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. TYM은 협력사가 본 실천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발전하고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.

2. 실천규범 대상

TYM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을 준수할 것을 권장합니다.

3. 협력사 책임과 역할

TYM의 모든 협력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실천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. TYM 및 TYM의 위탁을 받은 제3자기관은 협력사가 본 실천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과 사회 통념의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할 수 있으며, 확인된 리스크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. 협력사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리스크 완화 계획 수립 및 이행조치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. 본 실천규범은 협력사의 의무이행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, 강제조항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함으로 정기적으로 보완 및 개선될 수 있습니다.

II. 윤리경영

1. 투명경영 및 반부패 방지

- i. 협력사 임직원은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뇌물수수, 횡령, 알선, 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되며, 약점이나 흠결 등을 이용하여 부

당한 대가를 의도하지 않도록 합니다.

- ii. 협력사 임직원은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청렴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2. 이해상충 방지

- i. 협력사는 정해진 업무규정에 따라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 임직원은 부당, 부적절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 수단을 제안, 제공,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. 임직원 개인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제3자를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.

3. 불공정거래 방지

- i. 협력사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등 불공정한 거래 등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ii. 협력사는 제·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, 공급량, 거래지역,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다른 사업자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,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.
- iii. 협력사는 경쟁업체, 협력업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부정확한 방법으로 정보를 획득하지 않으며, 회사 또는 제3자가 부정하게 획득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iv.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.

4. 위조 및 사제 유통용 부품 방지

- i. 협력사는 승인되지 않은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생산, 사용해서는 안 되며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사용,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.

- ii. 협력사는 작업장 내에서 위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용 또는 생산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며, 이를 확인한 경우 TYM 혹은 고객사에 즉각 통보해야 합니다.
- iii. 협력사는 생산한 원재료 및 부품 등이 사업목적 또는 계약조건 등에 맞게 사용,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5. 정보보호

- i.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영업비밀이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를 무단 유출하지 않으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 및 승인없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- ii. 협력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가 공유한 지적재산권을 존중해야 하며, 협력사가 보유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 및 침해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iii. 협력사는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적법한 범위내에서 수집·이용해야 하며,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
6. 자재구매 책임

- i. 협력사는 제품에 포함된 분쟁광물을 포함한 모든 광물 및 원자재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합니다. (분쟁광물: 아프리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4대 광물로 주석, 텅스텐, 탄탈륨, 금 등)
- ii. 협력사는 광물 및 원재료를 주로 취급하는 경우, 해당 광물 및 원재료의 채굴과 가공과정에서 인권침해, 윤리위반, 부정적 환경영향 등의 이슈와 관련성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III. 환경경영부문

1. 환경경영시스템 구축

- i.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 국가의 환경 관련 법률, 규제를 준수

해야하며, 필요 시 환경관련 인허가를 취득, 유지해야 합니다.

- ii. 협력사는 사업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을 완화하기위해 조직, 계획, 절차, 성과점검 등으로 구성된 환경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(환경경영시스템: ISO14001표준 등)

2.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

- i.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3. 수자원 관리

- i.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및 폐수 배출량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재활용량 증대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 또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은 법적 기준 혹은 그 이상의 내부 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.

4. 대기오염물질 관리

- i. 협력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준수해야 합니다.

5. 폐기물 관리

- i. 협력사는 폐기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적절한 방법으로 매립,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해

야 합니다. 또한 폐기물 재사용, 재활용을 확대하고 폐기된 원재료 및 부품 등을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- iii. 협력사는 생산하는 제품의 전체 수명주기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매립, 소각 시 환경영향을 미치는 잔유물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6. 화학물질 관리

- i. 협력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, 보관, 사용,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,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. (화학물질안전원; MSDS)
- ii. 협력사는 조달, 생산, 판매, 유통하는 원재료 및 부품 등에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노력해야 합니다. (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; RoHS 등)

IV. 안전/보건 부문

1.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

- i. 협력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각국의 안전보건 관련 법률 및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, 사업운영에 필요한 모든 안전보건 관련 인허가를 취득, 유지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사업 운영에 따른 안전보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, 계획, 절차, 결과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해야 합니다.

2. 기계, 기구, 설비의 안전관리

- i. 협력사는 사업장내 유해, 위험한 기계, 기구, 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, 평가해야 합니다.
- ii. 유해, 위험한 기계, 기구, 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장치, 방호벽, 긴급장치, 요원 등을 설치, 배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
- iii. 협력사는 임직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. 안전보호구는 임직원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지·관리되어야 합니다.

3. 비상상황 대응

- i. 협력사는 자연재해, 집단감염, 화재 및 안전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. 또한 비상상황 발생 시 보고, 대응, 후속조치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매뉴얼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ii. 비상상황 발생 시 탈출로, 유도등, 화재감지기, 경보기, 소방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, 정상 작동 여부는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
4. 사고 관리

- i. 협력사는 사업재해 또는 질병 발생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 발생 시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들을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.
- iii. 협력사는 산업재해 또는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, 그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5. 안전진단

- i. 협력사는 사고위험 또는 유해인자에 임직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작업공간의 안전·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. 평가 결과는 임직원에게 공개하며 결과에 따라 기계, 기구, 설비를 개선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안전위험성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업공간의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, 임직원이 쉽게 이해 및 접근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합니다.

- iii. 협력사는 임산부, 연소자 등을 안전보건상 고위험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, 장애인, 해외근로자 등 사회취약 임직원이 작업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합니다.

V. 경영시스템 부문

1. 기업성명서 공시 권장

- i.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 또는 이에 준하는 사회적 책임 이행의지를 대내·외에 전파할 것을 권장합니다.

2. 담당자 선임

- i. 협력사는 사회적 책임 활동 업무를 담당할 실무자를 선임 및 활동 계획 수립, 이행사항을 감독할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.

3. 리스크 점검

- i. 협력사는 윤리, 환경, 노동인권, 안전보건 분야의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, 중대한 리스크를 발견한 경우, 완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.

4. 교육 및 소통

- i.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에서 제시하는 사항 등을 임직원에게 교육 및 추진계획 및 이행성과 등을 공유해야 합니다.

5. 정보 관리

- i. 협력사는 윤리, 환경, 노동인권, 안전보건 분야의 현황 및 리스크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고객사 등에서 해당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경우,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6. 고충처리제도 운영

- i. 협력사는 임직원이 윤리, 환경, 노동인권, 안전보건 분야의 법률 및

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 또는 인지하거나, 개인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당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합니다.

- ii. 협력사는 임직원이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, 위협, 보복, 조롱 등 불합리한 조치를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하며,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해야 합니다.

7. 거래업체(하위 협력사) 관리

- i. 협력사는 제품 혹은 서비스를 기획, 설계, 판매, 제조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맺은 거래업체(하위 협력사)에게 윤리, 환경, 노동인권, 안전보건 내용을 관리하도록 권장해야 합니다.

8. 규범 준수

- i. 협력사는 TYM 또는 TYM이 지정한 제3자가 진행하는 정기적인 서면점검 현장점검 시 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의 준수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절한 문서를 작성, 관리해야 하며, 해당 문서는 사업운영의 실제와 사실을 기반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.

※적절한 문서

-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 (산업안전보건법 225조)
- 산업재해 및 질병 발생 기록 (산업안전보건법 10조)
- 취업규칙 (근로기준법 93조)
- 적절한 임금액 (근로기준법 48조)
- 윤리헌장 준수 동의서
- 비상상황 매뉴얼
- 근로시간 기록 일지 등

- iii. 협력사는 본 실천규범의 준수 여부에 대한 서면 점검 혹은 현장방문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함이나 위반사항을 시의 적절하게 개선

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
VI. 노동인권 부문

1. 차별 금지

- i. 협력사는 성별, 인종, 국적, 종교, 장애, 나이, 가족현황, 사회적 신분, 학력 및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, 승진, 교육 등의 대우를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
- ii. 협력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제도의 운영에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.
- iii. 협력사는 임직원의 모집·채용 시 직무수행에 필요 없는 조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.

2. 임금 및 복리후생의 제공

- i. 협력사는 법률, 제도를 준수하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. 임금은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하며, 임직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급여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임직원에게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며,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를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- iii. 협력사는 법률 및 제도에서 규정하는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.

3. 근로시간의 관리

- i. 협력사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하며, 휴식을 포함한 근로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.
- ii. 임직원이 동의하지 않는 연장근로를 지양해야 하며, 불가피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.
- iii. 임직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.

4. 인도적 대우

- i.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근로 시간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를 자제해야 합니다.
- ii.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사전에 고지하며, 자발적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.
- iii. 임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인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해야 합니다.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,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, 가해자에게는 징계,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적기에 하여야 합니다.

5. 결사의 자유 보장

- i. 협력사는 임직원의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, 정당한 교섭단체 설립과 운영을 허용해야 합니다.
- ii. 임직원의 대표자와 단체교섭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의에 임해야 합니다.
- iii. 임직원의 대표자 부재 시 개별 임직원이 교섭사항을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합니다.

6. 아동노동 금지

- i. 협력사는 어떠한 형태의 아동노동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, 신분증, 출생증명서 등 합법적 서류를 통해 임직원 및 취업지원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.
- ii. 연소자를 고용할 경우, 안전보건상 고위험 고강도 업무에 투입하지 않아야 하며, 연소자가 노동으로 인해 교육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.
- iii. 협력사는 아동노동에 관여되어 있거나 관련 법률을 위반하는 거래 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, 상기 사실을 확

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7. 강제노동 금지

- i. 협력사는 근로기준 법률에 따라 임직원을 작업에 투입해야 하며,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이나 임직원 의사에 반하는 의무적 근로를 금지해야 합니다.
- ii. 협력사는 임직원의 개인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신분증, 사증 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으며, 강제노동을 목적으로 폭행, 협박, 감금 등 신체적·정신적 속박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
- iii. 협력사는 신체적·정신적 속박이나 채무관계에 의한 강제노동 등에 관여하는 거거래업체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지 않아야 하며, 상기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

